

장기미집행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 해제 신청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,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 2개월	
토지소유자	① 성명(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)		② 생년월일 (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)
	③ 주소 (우) (전화번호:)		
토지에 관한 사항	④ 위치	⑤ 면적(㎡)	⑥ 지번
도시·군계획시설에 관한 사항	구분	⑦ 시설명	⑧ 편입면적(㎡)
	현황		
	구분	⑩ 실시계획인가일	⑪ 실효시기
	현황		⑫ 단계별 집행계획상 집행시기
해제 신청 사유	구분	입안권자가 해제입안을 하지 아니하기로 통지한 경우	신청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
	⑬ 선택 (√)		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8조의2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기미집행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귀하
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대상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	수수료 없음
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

작성 방법

- ⑦시설명란에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도시·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적되,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구분에 따른 시설명을 적어야 합니다.
예) 도로·공원·학교 등
- ⑧~⑩란은 해제 입안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서를 참고하여 작성합니다.
- 해제신청사유는 ⑬중에서 선택하시고 보다 구체적인 사유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처리 절차

